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

A large, stylized watermark of the GNSAD logo is centered on the page. The letters are bold and have a brush-stroke texture. The background behind the watermark consists of several sharp, white, triangular rays pointing upwards, set against a grey gradient background.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12. 02. 24

개정 2015. 02. 25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 직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부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며, 경상남도 체육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은 회장이 지명하는자로 위촉한다.<개정 2015.02.25>
③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체육회 관리부장이 한다. <개정 2015.02.25>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02.25>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심의사항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직원의 승진 및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조정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기타 회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5조 (회의소집 및 결의) ① 위원장은 제4조의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한다.
③ 징계요구자 및 조사자가 위원회의 위원인 경우에 그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징계대상자가 위원회의 위원인 경우 그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5일 전에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6조 (의안설명) 위원회에 부의된 의안설명은 관리부장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의사록) 의사록의 기록은 간사가 담당하며 의결내용에 대한 출석위원의 각각의 의사표시 사항과 출석확인에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8조 (심의내용의 비밀엄수)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참석자는 발표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5.02.25>